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5, No. 134, pp.239-251
<https://doi.org/10.29212/mh.2025..134.239>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평] 『6·25전쟁기 민사작전』(박동찬 저, 군사편찬연구소, 2024.)이 민사작전과 민군작전 연구의 밑거름이 되다.

김유석 |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교수

1. 들어가며

오늘날 우리 군은 ‘민사작전(civil affairs operations)’과 ‘민군작전(civil-military operations)’이란 용어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장 이 책의 제목인 『6·25전쟁기 민사작전』을 통해 6·25전쟁 기간에 ‘민사작전’을 수행했다고 유추할 수 있는 반면에 ‘민군작전’은 안 했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또한 민사, 민사작전, 민사군정, 민군, 민군작전 등 비슷하게 보이는 용어들이 있다. 하지만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거나, 언제 왜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지 잘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우리 군의 교리(敎理)를 보면 과거엔 미군 교리를 번역

하여 사용하다 보니 민사, 민사군정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 2005년부터 ‘민군작전’이란 용어를 사용했지만, 오늘날엔 ‘민사작전’, ‘민군작전’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유사한 용어에 대한 구분이 쉽지 않다.

이 책은 먼저 이런 궁금증을 해소한 다음에 본래의 내용인 6·25전쟁 기간 수행된 민사작전을 충실히 담고 있는 것이 우선 돋보이는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편찬 업무를 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책의 패턴과 눈에 띄는 차이를 보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는 군에서 공식적인 공간사(公刊史)를 편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접근하는 통사적(通史的) 접근을 주로 따른다. 하지만, 이 책은 ‘6·25전쟁기 민사작전’을 통사적 접근에만 치우치지 않고, 과거와 현대의 교리 변화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민사작전’에 대한 배경 설명을 앞부분에 포함하였다. 이로써 독자들이 추가적인 노력을 들이는 수고를 덜어주어 독자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이런 이유로 맨 처음에 근대적 ‘민사’ 개념의 등장을 역사적으로 추적하여 그 기원을 밝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아시아에 적용된 민사와 군정 사례를 통해 민사군정의 지역별·유형별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1947년에 새롭게 정립된 ‘민사군정’ 개념이 6·25전쟁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와 그동안 알려진 바가 없었던 민사 관련 협정과 명령서를 새로 발굴하여 분석하였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6·25전쟁 기간 민사작전에 대해서는 민사작전의 유형별 사례로 접근하여 이해도를 높였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6·25전쟁 기간 민사군정에 대해 ‘피난민 통제와 구호 활동’, ‘북한 지역 점령과 수복지구 관리’, ‘민간 의료와 교육 지원’ 등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우선 북한점령 문제는

군정과 관련된 분야이고 피난민 통제와 구호 활동, 민간 의료와 교육지원은 ‘민사’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6·25전쟁 기간 민사작전의 성공적인 부분과 미흡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평가와 교훈을 도출한 것도 이 책의 특징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 책은 우리 군이 앞으로 민군 및 민사 관련 정책 수립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며, 아울러 6·25전쟁 기간 민사작전과 오늘날 민군작전을 이해하는 좋은 안내서인 동시에 향후 민사와 민군작전 연구에 밑거름이 되는 유익한 책이 될 것이다.

2. 이 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이 책은 제1장 서론과 제5장 결론을 포함하여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론에 해당하는 것이 제2장부터 제4장의 내용이다.

〈제2장〉에서는 ‘민사작전의 정의와 개념의 정립 과정’을 고찰했다. 먼저 ‘민사작전 개념의 역사적 변천’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민사작전’과 ‘민군작전’, ‘군정(Military Government)’과 ‘민사(Civil Affairs)’의 정의와 개념 정립 과정을 고찰했다. 특히 근대적 ‘민사’ 개념의 등장을 역사적으로 추적하여 그 기원이 20세기 초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국제적으로 조인된 〈육상전의 법규와 관습에 관한 협약〉에 있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민사’의 개념이 ‘군정’에서 비롯되었으며, ‘군정 → 군정민사 → 민사군정 → 민사 → 민사작전’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다음은 ‘제2차 세계대전 시 유럽의 군정 및 민사’를 다루고 있

다. 이를 위해 1943년 ‘연합민사위원회(CCAC) 설립’, ‘유럽 지역의 연합군정(AMGOT) 시행’으로서 미국과 영국의 이탈리아 시칠리아 군정, 연합군의 프랑스 민사행정을 살펴봤다. 이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민사·군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전개되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군사점령 - 군정 - 재건’의 과정을 거치는 유형으로 대체로 연합군이 추축국(樞軸國)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이탈리아를 비롯해 오스트리아와 독일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또 다른 유형으로 ‘군사점령 - 민정(민사) - 재건’의 과정을 거치는 유형이다.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 국가는 추축국에 의해 점령된 지역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의 마지막 주제는 ‘태평양전쟁과 동아시아의 군정·민사’이다. 이를 위해 ‘주한 미군정의 설치 배경’, ‘미 제24군단의 한반도 진주와 주한 미군정 수립’을 살펴봤다. 특히 미 제24군단의 한반도 진주와 주한 미군정 수립과 관련하여 ‘미군 전술부대의 진주’, ‘군정부대의 한반도 전개’, ‘주한 미군정 사령부 설치와 군정 실시’로 나눠 상세히 다루었다.

태평양 지역에서는 추축국인 일본이 ‘군사점령-민정(민사)-재건’의 유형으로 진행했다. 또한 우리나라, 괌, 오키나와 등 같이 일본에 점령되었다가 해방된 지역은 ‘군사점령-군정-재건’의 형태로 진행되었음을 제시했다.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유럽 지역의 ‘연합군정’과는 달리 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군정을 실시한 것도 특징 중의 하나임을 제시했다.

한편, 남한 지역에서 약 3년간에 걸친 주한 미군정의 활동은 냉전의 도래와 확산이라는 국제적 환경 변화와 소련의 비협조적 태도로 인해 한반도에서 ‘통일된 자유독립국가 건설’이라는 초기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를 수립하는데 가장 크게 이바지하였다는 점에서 주한 미군정의 활동에 대한 의의를 짚어볼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6·25전쟁 기간 민사군정 기구 편성’을 다루고 있다. 먼저 ‘민사군정 용어의 등장과 6·25전쟁 적용’을 살펴봤다. 이를 위해 ‘군정·민사에서 민사·군정으로 전환’, ‘민사·군정의 책임과 기능’을 고찰했다. 고찰 결과 민사·군정은 군사작전을 제외한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 정책 수립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그것의 활동 영역이 대단히 폭넓음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의 실제 수행은 민사·군정의 시행 기간, 대상 지역의 군사작전 전개 과정, 그리고 해당 지역의 사회적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한미 민사협정〉의 준비와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이를 위해 ‘〈한미 민사협정〉 작성 배경’, ‘〈한미 민사협정〉 작성 과정과 주요 내용’을 고찰했다. 주권을 가진 국가에 외국 군대가 파견될 때 파병과 주둔에 관한 국가 간의 협정이나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 국제법과 국제관례라는 점에 비추어 1950년 7월에 작성된 〈민사협정문〉 초안을 새롭게 발굴하여 자세히 분석했다. 이를 통해 미 합참이 승인한 〈민사협정〉 초안은 실제 유엔 군사령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에 협정 체결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이는 유엔군의 북진으로 대한민국 정부와의 〈민사협정〉 체결 자체가 큰 의미가 없고, 또 짧은 시기에 중공군 참전으로 전황이 급격히 변하면서 당시 상황과 관련한 새로운 협정 체결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다만, 〈민사협정〉은 향후 한미 간에 체결되는 민사 관련 개별 협정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음을 밝혔다.

제3장의 마지막 주제는 1950년 10월에 창설되어 1953년 6월

까지 활동한 민사업무 전담 부대인 ‘유엔한국민사원조사령부(UNCACK)’의 조직과 활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전술 부대 민사부와 공중보건복지팀 설치’, ‘유엔한국민사원조사령부(UNCACK) 창설’을 고찰했다. 이를 통해 미국은 군정이나 군사 점령보다는 ‘민사’나 ‘민간 원조’라는 표현을 쓰고 될 수 있으면 미국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유엔의 명칭과 자원을 활용하려 했다. 그 대표적인 조직이 유엔한국민사원조사령부(UNCACK)였으며, 이 조직을 통한 군의 민사활동은 단순한 원조와 구호 업무만이 아니라 군사작전을 우위(優位)에 둔 전술적 목표 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 육군의 ‘민사·군정 교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었음을 밝혔다.

〈제4장〉에서는 ‘6·25전쟁 기간 민사군정의 유형별 사례’로 ‘피난민 통제와 구호 활동’, ‘북한 지역 점령과 수복 지구 관리’, ‘민간 의료와 교육지원’ 등 3개 분야를 검토했다. 성격상 피난민 통제와 구호 활동, 민간 의료와 교육지원은 ‘민사’에 관한 것이며, 북한점령 문제는 ‘군정’과 관련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피난민 통제와 구호 활동’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제1차 피난 시기 피난민 통제와 구호’, ‘제2차 피난 시기 피난민 통제와 구호’를 고찰했다. 고찰 결과 전쟁 상황에서 피난민 통제와 구호는 민사작전의 핵심 기능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피난민의 적절한 분산 수용과 구호 대책은 국민의 사기 유지와 군사작전의 성공적 수행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피난민을 가장한 적 게릴라들의 후방 침투와 교란이 쉬워져 작전에 큰 혼란을 발생시킬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난민 통제와 구호는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라고 할 만큼 그 중요성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 지역 점령과 수복 지구 관리’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북한 지역 점령정책’, ‘북한 지역 점령과 민사작전 수행’을 고찰했다. 고찰 결과 유엔군사령부의 북한 지역 점령에 관한 기본 구상은 ‘전술 부대의 지역 점령 → 단기간의 군정 시행 → 유엔 한국위원단(또는 새로운 유엔기구) 감독 아래 총선거 시행 → 통일된 한국정부에 통치권 이양’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은 전술부대가 점령한 일부 지역에서 군정의 초기 실험이 진행되기도 하였지만, 북한 전역 시행은 현실화하지 않았다. 그것은 중공군의 대규모 공세로 1950년 12월 4일 유엔군이 평양에서 완전히 철수하면서 북한 지역에 대한 점령정책도 사실상 종료되었다. 채 두 달도 되지 않은 군정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고,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남겼다. 문제점 중 우선, 군정에 대해 한국과 미국·유엔의 시각차가 너무 컸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 언급할 사항은 정치적 승리 확보를 위한 정책 부재를 들 수 있다. 즉 북한 지역 점령 이후 군사적 승리를 정치적 승리로 이끌기 위한 점령 지역 정책을 소홀히 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4장의 마지막 주제는 ‘민간 의료와 교육 지원’이다. 이를 위해 ‘민간 의료지원’, ‘민간 교육시설 지원’을 고찰했다. 고찰 결과 민간인 의료지원은 국가와 사회의 보건상태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치료와 보건, 군과 민의 상호 협조 아래 의무시설 사용, 병원 개보수, 공공 의료시설에 대한 의료 장비와 의약품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민간인에 대한 군의 의료지원은 군사작전의 성공적 수행에 필요한 전제조건이었다. 따라서 유엔민사원조사령부(UNCACK)가 추진한 사업 중 대규모로 수행된 것이 보건의료 지원사업이었다.

교육지원은 미래성의 성격을 띤 민사업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은 한 국가의 장래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쟁은 막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왔고 한국 사회의 모든 것이 그러하였듯이 교육 분야에서도 마비 현상을 초래했다. 6·25전쟁 기간 민간 교육지원은 의료지원과 마찬가지로 UNCACK가 주로 담당했다. 6·25전쟁 기간 군의 교육지원 사업은 민사작전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이는 “전시 민간인에 대한 군의 각종 지원 및 협력 등의 활동”으로 규정하는 현재의 민사작전 개념에 부합하고, 또 현대전에서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자국과 상대국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행위의 근간에 교육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3. 나가며: 이 책의 의의와 가치

이 책은 6·25전쟁 기간 민사작전에 관한 최초의 심층 깊은 연구서라는데 우선 의미가 있다. 또한 민사작전이라는 용어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개념과 정의도 변해왔기 때문에 이를 재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6·25전쟁 기간 민사군정에 대해 ‘피난민 통제와 구호 활동’, ‘북한 지역 점령과 수복 지구 관리’, ‘민간 의료와 교육지원’ 등 3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런 절차를 통해 6·25전쟁 기간 민사작전의 성공적인 부분과 미흡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평가와 교훈을 도출했다는데 의미가 매우 크다. 이 외에도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의의와 가치가 있다.

첫째, 근대적 ‘민사’ 개념의 등장을 역사적으로 추적해 기원을 밝혔다. 또한 ‘민사’의 개념이 세계사적으로 군정 → 군정민사 → 민사군정 → 민사 → 민사작전 → 민군작전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

먼저 ‘민사’ 개념의 등장과 관련하여 오늘날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민사’와 관련한 제반 교리들은 처음에는 대부분 미군 교리를 통해 들어온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 책에서는 우리 군의 ‘민사작전’ 교범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1958년에 발간한 야교 41-15 『민사 및 군정부대』가 1954년에 미 육군이 발간한 야전교범 41-15(FM 41-15 Civil Affairs Military Government Units)의 번역본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방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 1958년 첫 야전교범을 발간하여 군에서 ‘민사’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한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고한 미군은 언제부터 ‘민사’라는 개념을 사용했는가에 대한 근원을 추적한 것이다.

6·25전쟁 시기에 적용된 미 육군 야전교범은 1947년도에 발행한 『민사군정』(U.S. Army and Navy, United States Army and Navy Manual of Civil Affairs Military Government(FM 27-5, 해군 OPNAV 50E-3),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7)이었다. 물론 이를 역추적할 경우, 1943년 판 『군정과 민사』(Military Government and Civil Affairs)를 보완한 것이다. 1943년 판은 1940년에 발간된 미 육군 야전교범 27-5 『군정』(FM 27-5 Military Government)과 야전교범 27-10 『육상전 규칙』(Rules of Land Warfare)를 보완한 것이다. 또한 이는 이전에 발간했던 1934년 판 『군법』, 제2부 육상전 규칙(Military Law, Part Two, Rules of Land Warfare)을 보완한 것이고 이것의 토대 역시 1914년에 『육상전 규칙』(Rules of Land Warfare)이다.

그런데 미군의 『육상전 규칙』이나 『군법』, 『군정』 등은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국제적으로 조인된 협약에

근거함을 밝힌 것이다. 즉 일명 ‘육전법(陸戰法)’으로 불리는 1907년 ‘헤이그 제4 협약’이었던 <육상전의 법규와 관습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specting the Laws and Customs of War on Land)>은 ‘1899년 헤이그 제2 협약’을 개정한 것이다. 1907년도 헤이그 제4 협약에 ‘민사’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적국 영토에 대한 군의 권력’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이것이 이후 각국에서 ‘육상전 규칙’ 제정에 근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전쟁부가 1914년에 만든 『육상전 규칙(Rules of Land Warfare)』도 이에 근거한 것임을 밝힌 것이다.

이처럼 ‘민사’의 근원을 우리 군의 근원은 미군이었다는 것은 쉽게 유추되지만, 미군의 근원을 역으로 찾아 들어가 그 뿌리가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서 국제적으로 조인된 협약에 근거함을 파헤쳐 독자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줬다는데 매우 흥미롭지 않을 수 없다.

둘째, 1947년 새롭게 정립된 ‘민사군정’ 개념이 6·25전쟁에 어떻게 적용됐는지와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민사 관련 협정·명령서들을 새로 발굴해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민사군정’ 개념이 6·25전쟁에 적용된 과정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밝혔다. 미군은 『야전교범 27-10, 육상전 규칙(FM 27-10, Rules of Land Warfare)』과 『야전교범 27-5, 민사군정(FM 27-5, United States Army and Navy Manual of Civil Affairs Military Government)』를 발간하였고, 이를 6·25전쟁 기간에 적용하였다. 특히 1947년도에 발간하여 6·25전쟁 기간에 적용한 야전교범 27-5(FM 27-5, 해군 OPNAV 50E-3)의 ‘민사’는 ‘군정’ 개념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6·25전쟁 이전인 1945년 8월~1948년 8월까지 한국에 존속한 주한 미군

정에 의해 남한 지역에서 기존 정치·사회 질서의 복원에 초점을 맞춘 민사활동이 이뤄졌던 것도 이런 맥락임을 찾았다. 또 6·25전쟁 시기 남북한의 민사군정 작전 시 기본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더한다는 점을 밝혀냈다는 점이다. 이처럼 FM 27-5와 FM 27-10은 한국의 미군정과 6·25전쟁 시기 민사군정의 기본 안내서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임을 밝혔다.

다음은 민사 관련 협정·명령서들을 새로 발굴해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1950년 10월 7일 <유엔군사령부 작전명령 제2호 부록 I(민사)>로 민사 관련 정식 첫 명령서가 유엔군사령관 명의로 예하 부대에 하달되기까지의 미국 내 정책 결정이나 명령서가 하달된 후 그것의 실행 과정 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세히 연구된 바가 없었다. 이런 공백의 역할을 한 것이 <민사협정(Civil Affairs Agreement) 초안>의 확정 과정을 밝혀낸 것이다. <민사협정 초안>은 미 육군부의 작전참모부 산하 작전기획국(CSGP O)이 주도하여 작성한 것으로, 1950년 7월 6일에 극동군사령부와 주한미국대사관에 회람한 후에 미 합참은 초안을 1950년 9~10월에 확정된 것이다. 하지만 1950년 10월에 북진작전이 개시되면서 대한민국과의 ‘민사협정’ 체결보다 북한 지역에서의 ‘민사·군정 지침’ 마련과 시행에 중점을 두어야 했기 때문에 실제 협정 체결은 보류되고, 1950년 10월 7일 <유엔군사령부 작전명령 제2호 부록 I(민사)>로 민사 관련 정식 첫 명령서가 나온 과정을 상세히 밝혔다.

이 책에서는 ‘<한미 민사협정> 작성 과정과 주요 내용’의 항목을 별도로 할애하여 이와 관련한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총 12개 항목으로 구성된 <민사협정 초안>이 작성되었다는 사실은 그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았었다. 12개 항목은 “민사협정의 목적, 군

사적 필요성, 사법관할권, 면세, 청구, 항구·철도·도로·공항·설비·시설을 포함한 병참, 물품 및 서비스 조달, 통화와 신용거래, 외화 관리 및 미국의 기구(instruments) 보호, 검열과 공보, 구호 및 지원 물품, 효력 발생일과 종료” 등이었다. <민사협정 초안>은 1950년 7월 전황의 급격한 변화로 실제 협정 체결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향후 한미 간에 체결되는 민사 관련 개별 협정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밝혔다.

셋째, 6·25전쟁 기간 민사작전의 3대 유형인 ‘피란민 통제와 구호’, ‘점령지역 행정’, ‘민간 의료와 교육지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는 점이다. 그중에서 여기서는 ‘피란민 통제와 구호’ 관련 사항만 일부 언급하고자 한다.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약 3개 월만인 5월 20일 기준 우크라이나 인구 약 4,200만 명 중에 피란민(避亂民)은 약 1/3에 해당하는 1,400만 명을 넘어섰다. 전쟁이 발생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막대한 손실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 전쟁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피하고자 한시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피란민이 발생한다. 따라서 피란은 대재앙과 같은 전쟁이 일어난 국가의 국민이라면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주민을 안전지역으로 대피시키거나 이주시켰는지 아니면 각자도생(各自圖生)에 내몰렸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6·25전쟁 기간 피란민을 분류하면 대략 ‘초창기 피란(1차 피란)’과 ‘1·4후퇴기 피란(2차 피란)’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그중에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북한 주민 월남(越南)을 포함한 1·4후퇴기 피란인 2차 피란이다. 전쟁 초창기엔 갑자기 당한 북한의 기습남침이었다는 점과 서울을 사수한다는 정부 발표 등으로 피란 시기를 놓친 사람이 많았다. 게다가 피란 갔던

사람들도 피란 생활 3개월 만인 ‘9·28서울수복’을 전후하여 다수가 전쟁 이전에 살던 곳으로 귀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시 3개월 후인 1951년 1·4후퇴 때는 상황이 달랐다. 6·25전쟁 초창기보다 ‘1·4후퇴’ 때 피란민들이 훨씬 많았다. 이것은 중국군이 참전하면서 전선이 후퇴하여 1·4후퇴 상황이 발생하자, 전쟁 초기 서울을 빼앗기고 낙동강전선까지 밀렸던 상황이 또다시 재현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강하게 작용했다. 또한 전쟁 직후 서울을 비롯한 각지의 주민이 피란하지 않은 채 ‘잔류파(殘留派)’로 남았다가 북한군에게 ‘반동분자’ 또는 ‘수탈의 대상’으로 큰 피해를 봤다. 그뿐만 아니라 인천상륙작전 이후 ‘부역자(附逆者)’로 분류되어 피해를 받았던 경험이 있어 피란을 서들렀다. 게다가 중국군의 개입 후 12월 중순부터 북한 지역에서 내려온 북한 출신 월남민(越南民)이 추가되면서 피란민이 급증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피난민 통제와 구호 활동’을 1차 피난 시기와 2차 피난 시기로 나눠서 피난민 통제 분야와 피난민 구호로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료와 현황들을 제시하면서 비교적 상세히 다뤘기 때문에 향후 6·25전쟁 시기 피란민 연구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영문제목 : ‘Civil Affairs Operations during the Korean War’ serves as the foundation for research on civil affairs operations and civil-military operations.

영문저자명 : Kim You-suk